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2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3.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호향재가주간보호시설 (이하 “시설”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

시설은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조 (적용범위)

시설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모든 직원은 규정을 준수하며,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급여계약 등)

- ① 시설과 이용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④ 계약 체결 시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비급여비용에 따라 산정한다.
-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6조 (급여비용 청구)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청구한다.
-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 1. 일반 대상자: 15%
 - 2. 의료급여 대상자: 6%
 - 3. 저소득 경감대상자: 6% 또는 9%
 -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
- ③ 급여비용은 이용자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계약기간)

-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으로 한다. 다만, 시설이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② 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이용자 등이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④ 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볼수 있다.

제8조 (계약해지)

- ①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의무)

-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제2조 (이용료 납부)

-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일까지 우편물 발송 또는 알림톡 등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 (서비스 내용)

- ① 시설은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1. 신체활동 지원
 - 2. 일상생활 지원
 - 3. 개인활동 지원
 - 4. 정서 지원
 - 5. 인지활동지원 등
- ② 다음 각호의 서비스는 제외한다.
 - 1. 이용자 외 가족 등에 대한 가사서비스
 - 2. 기타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 행위

제2조 (특별보호)

- ①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전염병(A형간염, 결핵, C형간염, 옴)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장기요양운영시설)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비용의 부담)

① 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말일까지 기관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③ 비용의 부담사항은 제12조 각 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용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상담 및 의견 건의)

① 이용자는 자신의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 의뢰를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권익과 기본권이 훼손, 말살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가정방문 시 모든 생활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상담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견 및 건의할 수 있다.

④ 보호자는 이용자의 가정방문 서비스 관련하여 건의할 수 있으며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시설장은 이용자 및 가족의 합당한 건의와 의견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이를 시설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⑥ 시설장은 이용자의 “생활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존엄성 존중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이용자 사생활 보호지침에 따른다.

제6조 (이용자의 사고 및 질병)

- ① 시설은 이용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당사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직원의 현저한 직무유기 또는 부주의로 인한 이용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치료비 등 일체를 책임진다.
- ④ 이용자의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관에서는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부재나 연락 두절인 경우는 통화 시도 시간 등을 기록하고 추후 통화 때 통보토록 한다.
- ⑤ 이용자에게 치료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보호자는 치료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경비 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⑥ 이용자가 5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시설장은 어르신을 퇴소 조치할 수 있다.
- ⑦ 시설은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내용을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알려야 할 권리 보장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얻도록 해야 한다.
- ⑧ 시설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⑨ 이용자 및 보호자는 기관의 보호 원칙 및 방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